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16 호
2016년12월5일(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구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6-319호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6-320호 소규모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고시 /5
(월항 선착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6-2139호 제2차 여수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 열람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16-2143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8
- 여수시 공고 제2016-2145호 농지이행강제금 부과결정 고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9

회 관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웅천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16. 12. .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웅천지구 택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여수시의 새로운 중심부로 떠오르는 웅천지구를 친환경적인 복합 주거기능의 신시가지로 개발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

나. 사업의 개요 : 택지개발 2,800,43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여수시 웅천동 일원

나. 면 적: 택지개발 2,800,439㎡

(당초)	· 1	공 구	(2003~2010년)	:	692,802.5㎡
	· 2	공 구	(2009~2016년)	:	1,204,965.9㎡
	-	2-1공구		:	20,685.4㎡
	-	2-2공구		:	44,294.9㎡
	-	2-3공구		:	597,541.4㎡
	-	2-4공구		:	9,711.0㎡
	-	2-5공구		:	210,036.3㎡
	-	2-6공구		:	322,696.9㎡
	· 3	공 구	(2009~2016년)	:	902,670.6㎡

(변경)	· 1	공 구	(2003~2010년)	:	692,802.5m ²
	· 2	공 구	(2009~2016년)	:	1,204,965.9m ²
	-	2-1공구		:	20,685.4m ²
	-	2-2공구		:	44,294.9m ²
	-	2-3공구		:	597,541.4m ²
	-	2-4공구		:	9,711.0m ²
	-	2-5공구		:	211,527.8m²
	-	2-6공구		:	306,223.7m²
	-	2-7공구		:	14,981.7m²
	· 3	공 구	(2009~2016년)	:	902,670.6m ²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992. 12. 21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8.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 및 공영개발과(061-659-457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소규모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승인 번호	피 인 가 자		매립목적	면적 (㎡)	면허장소	공사기간	매립예정지 토지이용계획
	주 소	성 명					
2016-2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장)	월항 선착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840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62-4 지선	'16.12.12.- '17.5.30.	호안도로
2016-3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장)	제도지구 연안시설 정비공사	543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73-1 지선	'16.12.6.- '17.5.30.	호안도로

2016. 12. .

여 수 시 장

제2차 여수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 열람·공고

도시교통체계의 정비촉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최종계획을 수립하기 전 같은 법 제5조 8항에 따라 사전 열람·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여 수 시 장

1. 과 업 명 : 제2차 여수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계획의 주요내용

-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분석
 - 도시교통 및 통행실태 현황 분석
 - 장래 교통수요예측 등 소통상태 진단
- 부문별 개선방안 도출
 -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흐름의 개선방안
 - 광역교통체계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 교통시설 및 환경 개선방안
 - 주차장 건설 및 운영방안
 - 교통안전체계의 개선방안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등
- 투자계획 수립
 - 부문별 경제성평가 및 투자우선순위 산정
 - 연차별 투자계획 및 투자효과 분석
 - 재원조달방안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6년 12월 5일 ~ 2016년 12월 25일(20일간)
4. 열람장소 : 여수시 교통과(☎061-659-4155)
5. 주민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 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교통과(061-659-4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05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법 제34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3. 공고기간 : 2016. 12. 05. ~ 12. 19.(14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대상 및 내용

No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및 가산금 내역			반송사유	비고
					총 고지금액	과태료	가산금		
1	정재*	83.0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길 **	금연구역 내 흡연(pc방)	112,200	100,000	12,200	폐문부재	독촉

6. 공고내용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리며,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에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유의사항

본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보건소(061-659-4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5.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6.12.05. ~ 2016.12.20.(15일간)
2. 공고제목 : 농지이행강제금 부과결정 고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및 부과대상농지 내역

부과대상자(소유자)		부과대상농지					부과결정액 (원)
성 명	주 소	읍면동	리	지번	지목	면적(㎡)	
강○근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50,***호(봉계동, 아주타운상가)	돌산읍	신복리	1509-4	전	792	2,471,040
안○동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1길 ** (신기동)	남면	화태리	135	전	734	1,614,800
김○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 30,105동**호(방배동, 방배1차현대아파트)	화양면	이천리	47	답	1,663	4,456,840
박○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 1길 **	화정면	개도리	487	전	1,540	2,479,400

4.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6.12.5. ~ 2017.1.5.(30일간)
- 장 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농지업무담당자)
- 신청방법 : 서면 제출(관련 증빙자료 첨부)

5. 기타사항

- 위 사항은 농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결정 고지한 사항으로 당해 농지처분명령이 이행(소유권 이전)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이의신청사항은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고, 이의신청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여수시청 농업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규정에 의거 징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정책과(☎061-659-44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